##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 박상혁 • 박희승 • 이연희

정진욱 • 한민수 • 김원이

김주영 · 이해식 · 박홍근

염태영 · 한준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 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전기통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 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주 거지역 및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62조의2(대규모 데이터센터 구
	축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전
	기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u>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u>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
	으로 영향을 받는 주거지역 및
	<u>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u>
	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
	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따라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u> </u>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